

제2조 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, 계약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(월이용료)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해당하는 부담비율을 적용한다.

라. 그 밖의 비용 부담액 - 비 급여 항목의 금액이 발생시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.(응급상황시 병원비, 교통비 등)

마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
○ 2023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 본인부담(15%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

*장기요양수가

방문 요양	금 액 (원)							
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	16,190	23,480	31,650	40,280	46,970	52,880	58,930	65,000
방문 목욕	차량 이용 시					방문목욕(차량 미이용)		
	차량 내 목욕		가정 내 목욕					
	82,160		74,070			46,250		

*본인 부담금

구분	장기요양급여비용(재가급여)
일반이용자	15%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전액면제
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	9%, 6%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라)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나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다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라)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 - 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